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년 11월 19일

나. 제출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11월 28일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김 홍 태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 :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개정 :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안 제11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조문 정비
 - 현행 : 「지방재정법」 제78조, 제94조
 - 개정 : 「지방회계법」 제39조, 제49조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중 우

- 본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